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000호

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규제개혁위원회의 「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심의결과(‘21.12.10.)」를 반영하고,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명확화(안 제10조, 제15조, 별표1, 별지 제6호)

- 신기술 지정 심사의 객관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

나. 신기술 사후관리 강화(안 제20조의2 신설)

-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해 하자 발생 또는 품질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기술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
- 전자우편 : ajajulie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555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<http://www.molit.go.kr>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
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(전화 044-201-3558, 3559)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